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47호 2026. 6. 29. (월)

고시 · 공고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
- 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
- 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목 포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

구분	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폐지 사유
1	산정동 1040-23	목포시 신촌로8번길 11	2026. 6. 29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313)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보조금 지원기준(한도) 및 지원시기 등을 도 조례 및 현행 지급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, 보조금 지급·관리에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원기준(한도) 및 지원시기 변경

<입지보조금>

- (지원기준) 분양가 50% → 30%, 최대 3억원 → 최대 4억원
- (지원시기) 영업활동 시작 후 지원 → 착공 시 70%, 공장등록시 30%

<시설보조금>

- (지원기준) 설비금액 2% → 20억 초과 투자액의 5%, 최대 2억원 → 최대 5억원

3. 개정시행규칙안 : 별첨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. 관계법령

- 「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
- 「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및 동 시행규칙

5. 입법예고 : 2026. 6. 29. ~ 7. 20.(21일간)

6. 의견제출 ※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전략산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제출처 : 58724, 목포시 수문로 32, 3층(전략산업과)
- 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4310), 직접방문 등

7. 기타사항

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(☎ 061-270-81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
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50퍼센트”를 “3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3억원”을 “4억원”으로 하고, 제14조제1항제4호 중 “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”를 “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5억원까지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“토지 등의 매입비는 등기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”를 “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,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지원기준) ① 제13조의 대상 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.	제14조(지원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입지보조금은 정상 분양가·매입비 또는 정상 임대료의 <u>50퍼센트</u> 범위 안에서 기업 당 <u>3억원</u>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.(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, 최대 5년 단위로 설정)	1. ----- ----- <u>30퍼</u> <u>센트</u> ----- <u>4억원</u> ----- ----- -----.
2. ~ 3. (생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시설보조금은 <u>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</u> 지원할 수 있다.	4. ----- <u>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5억원까지</u> ----- -----.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 ~ 제28조 (생략)	제15조 ~ 제28조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지원기준) ① 국내·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시기	제14조(지원기준) ① ----- -----
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토지 등의 매입비는 등기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.

2. ~ 5. (생략)

제30조 ~ 제33조 (생략)

-----.

1. 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%를 선지급하고,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.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 ~ 제33조 (현행과 같음)

의견제출서

조례명	목포시 국내·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	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	
	주소	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	

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제출자 (서명)

목포시장 귀하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』를 일부개정 함
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
자 행정절차법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
개선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
-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할 수
있도록 조례에 반영

2. 주요내용

-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, 해촉, 제척 등 규정 마련
 - 두 차례만 연임 가능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및 부적격(비위 등)위원 해촉 규정 신설

3. 개정시행규칙안 : 별첨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. 관계법령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5. 입법예고 : 2026. 6. 29. ~ 7. 20.(21일간)

6. 의견제출 ※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전략산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제출처 : 58724, 목포시 수문로 32, 3층(전략산업과)
- 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4310), 직접방문 등

7. 기타사항

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(☎ 061-270-81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”를 “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4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비위 사실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4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4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5.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
- ②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① (생 략)	제3조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<u>당 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성하되</u> ,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· 부시장·기획관리국장·미래전략산 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 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 원중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 -----당 <u>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 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</u> ,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3조 ③ (생 략)	제3조 ③ (현행과 같음)
④ 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과 목 포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하고, 그 외 위촉위원의 임 기는 <u>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.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신설)	제4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제4조의3(신설)

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
2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비위 사실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
제4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

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5. 위원 본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
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

- ②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이해당
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
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
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
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
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
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
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
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
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
로 그 안전의 심의·의결을 회
피하여야 한다.

제5조 ~ 제31조 (생 략)

제5조 ~ 제31조 (현행과 같음)

의견제출서

조례명	목포시 국내·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	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	
	주소	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	

목포시 국내·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제출자 (서명)

목포시장 귀하